

사단법인 4·19정신계승연맹

운영규정



4.19 Mental Succession Federation

제정: 2023. 07. 28.

개정: 2026. 07. 28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사단법인 4.19정신계승연맹 정관」(이하 "정관"이라 한다) 제46조에 따라 사단법인 4.19정신계승연맹(이하 "본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- ①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이 규정은 중앙회, 연합회, 지회, 각종 위원회 및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임원"이란 정관 제10조에 따른 이사장·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.
2. "직책"이란 임원 외에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직위를 말한다.
3. "중앙회"란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두는 본부 조직을 말한다.
4. "연합회"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광역자치단체"라 한다)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본회의 하부조직을 말한다.
5. "지회"란 시·군·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본회의 하부조직을 말한다.
6. "직원"이란 사무국에 근무하는 유급 종사자를 말한다.

제4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

- ① 이 규정은 정관에 우선하지 못하며, 이 규정이 정관에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.
- ② 회원의 종류·자격, 입회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5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「회원규정」에서 정한다.
- ③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2장 조직

제5조(조직 체계)

본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중앙회: 본회 전체를 총괄하는 본부 조직
2. 연합회: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조직
3. 지회: 시·군·자치구 단위의 조직

제6조(분사무소)

- ① 본회는 정관 제2조에 따라 국내·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- ② 분사무소의 설치·이전 및 폐지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, 이사장은 등기 및 주무관청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연합회 및 지회)

- ① 연합회 및 지회는 독립한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는 본회의 하부조직으로서, 그 권리·의무는 모두 본회에 귀속한다.
- ② 연합회 및 지회는 본회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. 다만,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연합회 및 지회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여 의견을 표명하려는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관할 구역에 연합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중앙회가 해당 구역의 지회를 직접 관리한다.
- ⑤ 연합회 및 지회의 설치·조직·운영, 분담금 및 사업의 위탁·정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「연합회·지회 규정」에 따른다.

제8조(명칭 및 표장)

- ① 연합회 및 지회는 그 명칭을 "사단법인 4.19정신계승연맹 ○○연합회" 또는 "○○지회"로 표기한다.
- ② 본회의 명칭·로고 및 표장을 외부의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이 사용하려는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이사장은 승인 없이 본회의 명칭 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)

- ① 본회는 목적사업의 전문적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1. 상설위원회: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
 2. 특별위원회: 특정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치하는 위원회
- ③ 이사장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활동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특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
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는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를 대외적으로 구속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고문 및 자문위원)

- ① 이사장은 정관 제19조에 따라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
제12조(임원과 직책의 구분)

- ① 본회의 임원은 정관 제10조에 따른 이사장, 이사 및 감사로 한다.
- ② 본회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위원장, 단장, 연합회장, 지회장 등의 직책을 둘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직책은 정관상 임원이 아니며, 대외 문서·명함 등에 이를 정관상 임원 또는 법인 등 기사항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으로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2항의 직책은 이사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제2항의 직책에 대하여는 정관 제41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사무국의 직제)

- ① 정관 제42조에 따라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, 필요한 경우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이사장이 정한다.
- ③ 사무국은 총회·이사회 및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, 연합회 및 지회와의 연락·조정 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장 회의의 운영

제14조(소집통지)

-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정관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.
-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 및 이동통신 문자메시지 등 수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.
- ③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·안건 및 원격영상회의로 개최하는 경우 그 참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5조(안건의 제출)

- ① 총회 또는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직접 부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회의에서 설명하여야 한다.

제16조(성원의 확인 및 의결권의 위임)

- ① 의장은 개회에 앞서 참석자 명부와 위임장을 확인하여 성원 여부를 선포한다.
- ② 정관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임장에는 위임인 및 수임인의 성명, 위임의 취지와 대상 회의를 명시하고 위임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 1명이 수임할 수 있는 의결권은 10명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위임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임 및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포괄적 위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17조(원격영상회의)

- ① 총회 및 이사회는 구성원이 동시에 음성과 영상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회의에 참여한 자는 해당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제1항은 서면에 의한 의결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,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 제30조에 따라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없다.

제18조(회의록)

- ①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 1.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개최 방법
 2. 재적인원과 출석인원(위임에 의한 출석 인원을 포함한다)
 3. 안건별 의사의 경과·요령 및 결과
 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회의록은 정관 제33조에 따라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.
- ③ 회의록 및 그 부속서류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.

제4장 임원 및 직원

제19조(임원후보의 추천)

- ① 이사장은 임원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원후보 추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.
- ② 임원후보는 이사회의 추천 또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으로 등록할 수 있다.

③ 후보 등록자는 정관 제13조의 선임 제한 및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선거관리)

- ① 임원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해당 선거의 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임원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. 다만,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인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찬반투표 또는 만장일치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21조(취임 및 보고)

- ① 선출된 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장은 정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고, 등기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.

제22조(사임 및 결원의 처리)

- ① 임원이 사임하려는 때에는 사임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결원의 보충은 정관 제11조제3항에 따른다.

제23조(직원의 임용 등)

- ①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- ② 직원의 복무·보수 및 퇴직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되, 세부사항은 정관 제42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「인사·보수규정」으로 정한다.
- ③ 정관 제41조 단서에 따른 실비는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제24조(위임전결)

- ① 이사장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상임이사 또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위임전결의 구체적 범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.
 - 1. 총회 및 이사회 소집
 - 2. 사무국장의 임면
 - 3.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- 4. 연합회 및 지회 설치의 승인 및 취소
 - 5. 회원에 대한 징계

제5장 사업의 운영

제25조(사업계획 및 실적)

- ① 사무국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정관 제38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총회가 승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③ 사무국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6조(추모 및 기념사업)

본회는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4.19혁명 기념일 등 주요 계기의 추모·기념행사
2. 희생자 및 공로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
3. 기념시설 및 사적지의 답사·보존 협력사업
4. 그 밖에 4.19혁명 정신의 계승·선양에 필요한 사업

제27조(조사연구 및 출판사업)

- ① 본회는 정관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사연구, 정책보고서 및 정기간행물의 제작·출판 사업을 시행한다.
- ② 본회 명의로 발간하는 간행물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발간물은 사무국에 보존한다.
- ③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28조(교육사업)

- ① 교육과정의 개설, 운영기준, 수료 기준 및 수강료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- ② 본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. 연합회 또는 지회의 명의로는 발급할 수 없다.
- ③ 본회의 명칭 또는 표장을 사용하는 교육장을 개설하려는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이사장은 승인된 교육장에 대하여 명판을 제공하고 교육 시스템을 지원한다.

제29조(강사의 양성 및 직급)

- ① 본회는 목적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하여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.
- ② 본회의 강사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1. 연수강사: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
 2. 전문강사: 연수강사로서 단독 강의 3회 이상을 수행한 자
 3. 책임강사: 전문강사로서 강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
 4. 지도강사: 책임강사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평가를 통과한 자
- ③ 제2항 각 호의 승급 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- ④ 지도강사는 강사 양성과정의 교수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- ⑤ 제2항의 직급은 본회가 위촉하는 내부 직급으로서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른 자격에 해당하지 아

니하며, 이를 자격 또는 자격증으로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강사 양성과정의 수강료 및 직급별 강사료의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
⑦ 강사는 직급의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⑧ 강사 위촉장 및 이수증은 본회 명의로 발급한다.

제29조의2(민간자격의 운영)

① 본회는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민간자격의 신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후에 시행한다.

③ 등록 전에는 자격,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,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격에 대하여 국가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자격증, 광고물 및 안내물에는 자격의 등록번호, 관리·운영기관, 환불에 관한 사항 등 「자격기본법」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⑤ 자격의 등급, 검정기준, 검정과목, 응시자격, 응시료 및 환불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「민간자격 관리·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⑥ 제29조제2항의 강사 직급과 제1항의 자격은 구분하여 운영하며, 직급의 부여를 자격의 취득 요건으로 하거나 자격의 취득을 직급 부여의 유일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.

제30조(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)

본회는 정관 제4조제5호에 따라 전시·공연·답사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31조(협약 및 수탁사업)

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·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수탁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승인된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.

②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고, 관계 법령 및 교부 조건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.

제32조(수익사업)

①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수익사업을 개시·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고,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.

④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하며, 회원 또는 임직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제33조에 따라 연합회 및 지회에 교부하는 사업비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예산집행으로서 이 항의 분배로 보지 아니한다.

⑤ 수익사업이 본회의 목적과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는 그 시정 또는 중단을 명할 수 있다.

제33조(사업의 위탁 및 사업비의 교부)

- ① 사업의 시행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며, 본회는 그 실행을 연합회 또는 지회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위탁을 하는 때에는 사업별로 위탁계약서 또는 사업시행 합의를 작성한다.
- ③ 사업비 및 조직운영 지원비의 교부 기준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「연합회·지회 규정」에 따른다.
- ④ 본회, 연합회 및 지회는 회원의 모집 실적 또는 하위 조직의 개설 실적에 연동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이를 약정할 수 없다. 다만, 실제 수행한 용역의 대가, 증빙에 근거한 실비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는 포상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장 재무 및 회계

제34조(고유번호증 및 계좌의 단일 관리)

- ① 본회의 고유번호증은 중앙회 명의로 1개로 통합하여 운영한다.
- ② 회비, 수강료, 참가비, 분담금 및 위탁사업 대금 등 본회의 모든 수입은 본회 법인계좌로 일괄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연합회 및 지회의 계좌는 본회 법인 명의로 개설·관리하며, 그 세부사항은 「연합회·지회 규정」에 따른다.
- ④ 임원, 직책자 및 직원 개인 명의의 계좌를 본회의 사업 관련 수입 또는 지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5조(예산의 집행)

- ① 예산은 승인된 목적과 항목에 따라 집행한다.
- ② 예산의 항(項) 간 전용은 이사장이 하고, 관(款) 간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③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내역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6조(수입의 수납)

- ① 회비 및 후원금은 계좌이체 등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연합회 또는 지회가 현장에서 부득이하게 수납한 금원은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본회 법인계좌로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, 이를 상계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37조(기부금 및 후원금)

- ① 기부금 및 후원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 관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②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모집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③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 내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.
- ④ 목적 또는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된 금품은 그 지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38조(대가성 금원의 처리)

- ① 후원금 및 기부금은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출연된 금원에 한정한다.
- ② 조직의 설치승인, 직책의 부여, 교육의 수강 등 반대급부가 있는 금원은 기부금 또는 후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며, 이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2항의 금원은 분담금, 입회비, 회비, 수강료 등 그 실질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하고, 사업수입 또는 회비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.

제39조(계약 및 물품의 관리)

- ① 1건의 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계약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거나 경쟁의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취득한 물품은 물품대장에 등재하고, 그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.

제40조(증빙 및 장부의 보존)

- ① 모든 수입과 지출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- ②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관계 법령에 따르되, 10년 이상으로 한다.

제7장 포상 및 징계

제41조(포상)

- ① 정관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공로패, 감사패 및 표창장으로 한다.
- ② 포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수여한다.
- ③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임원, 연합회장, 지회장 또는 위원장이 할 수 있다.

제42조(징계의 사유 및 시효)

- ① 회원 또는 직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.
 - 1. 정관, 이 규정 또는 총회·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때
 - 2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
 - 3. 본회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
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
 - 5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때
 - 6. 본회의 자금 또는 재산을 유용하거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때
 - 7. 제34조를 위반하여 개인 명의 계좌로 본회의 수입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때
 - 8.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모집 실적 등에 연동한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정한 때

9. 승인 없이 본회의 명칭·로고 또는 표장을 사용한 때
 10. 강사 직급 또는 자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, 등록되지 아니한 자격을 자격으로 표시한 때
 11. 회원 명부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
 12. 직무와 관련하여 성희롱·성폭력, 폭언·폭행 또는 그 밖의 괴롭힘 행위를 한 때
 13.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
 14. 그 밖에 회원 또는 직책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
- ②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의결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사유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.
- ③ 제2항의 기간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.

제43조(징계의 종류 및 양정)

- ① 정관 제9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제명, 자격정지 및 견책으로 한다.
- ② 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며, 그 기간 중에는 회원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.
- ③ 제명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, 자격정지 및 견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.
- ④ 어떠한 경우에도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.
- ⑤ 징계의 양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.
 1. 행위의 동기 및 그 정도
 2. 고의 또는 과실의 여부
 3. 본회에 미친 손해의 정도
 4. 뉘우치는 정도 및 손해의 회복 여부
 5. 종전의 징계 이력 및 포상 이력
- ⑥ 본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에는 징계와 별도로 그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⑦ 직책자에 대한 징계는 제12조에 따른 직책의 해촉과 별도로 하며, 병과할 수 있다.

제44조(징계의 절차)

- ① 이사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징계 의안을 이사회 또는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장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③ 징계 대상자에게는 미리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징계 대상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.
- ⑤ 징계 대상자는 정관 제25조 및 제32조에 따라 자신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⑥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와 사유 및 재심 청구의 방법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제12호의 사유에 관한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5조(재심의 청구)

- ①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 의결에 의한 징계의 재심은 이사회가, 총회 의결에 의한 징계의 재심은 총회가 심의한다.
- ③ 재심 청구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재심의 청구는 징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. 다만, 의결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.

제8장 문서 및 정보의 관리

제46조(문서의 처리 및 보존)

- ① 본회의 모든 문서는 접수·발송 대장에 등재하여 처리한다.
- ②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, 준영구, 10년, 5년 및 3년으로 구분한다.
- ③ 정관, 회의록, 재산 관계 서류 및 주무관청 인허가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.

제47조(인장의 관리)

- ① 본회는 법인인감, 이사장 직인 및 사무국 직인을 둔다.
- ② 인장은 인장대장에 등재하고 사무국장이 관리하며, 사용 시 사용대장에 기록한다.
- ③ 연합회 및 지회의 인장은 본회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
제48조(개인정보의 보호)

- ① 본회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회원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책임자는 사무국장으로 한다.
- ③ 회원명부는 본회의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
제49조(대외 공표)

- ① 성명서, 보도자료 등 본회 명의로 대외에 공표하는 문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 임원, 직책자, 회원, 연합회 및 지회는 개인 또는 해당 조직의 의견을 본회의 공식 견해로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장 보칙

제50조(이해충돌의 방지)

- ①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는 정관 제25조 및 제32조의 제척사유를 적용한다.
- ② 임원, 직책자 및 직원은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거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사회에 고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1조(주무관청 보고)

- ① 이사장은 사업계획서·예산서 및 사업실적서·결산서 등을 「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임원의 변경, 정관의 변경, 주사무소의 이전 및 수익사업의 개시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2조(하위규정)

-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둔다.
 1. 회원규정
 2. 연합회·지회 규정
 3. 인사·보수규정
 4. 회계규정
 5.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
-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정관 제5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제정·개정하며, 그 밖의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제정·개정한다.

제53조(규정의 제정 및 개정)

-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의결로 한다.
- ②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의 의결로 한다.
- ③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정은 지체 없이 회원, 연합회 및 지회에 공지하여야 한다.

제54조(준용)

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,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 규정의 폐지)

종전의 「사단법인 4.19정신계승연맹 운영규정」(2023. 7. 28. 제정) 및 그 부속 「업무추진비 및 성과급 규정」은 이를 폐지한다. 다만, 이 규정 시행 전에 확정되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.

제3조(조직 및 직책에 관한 경과조치)

-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설치·운영 중인 연합회, 지회 및 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
-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직책자는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.

제4조(회원에 관한 경과조치)

「회원규정」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회원의 종류·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종전의 예에 따른다.

제5조(하위규정의 제정)

이사회는 이 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.